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정	2005. 10. 5	조례 제 663호
개정	2006. 1. 11	조례 제 791호
	2006. 4. 12	조례 제 799호
	2006. 10. 13	조례 제 831호
	2006. 12. 29	조례 제 856호
전문개정	2007. 7. 1	조례 제 884호
개정	2007. 12. 17	조례 제 910호
전문개정	2008. 12. 29	조례 제 966호(제명개정)
개정	2009. 6. 26	조례 제1039호
	2009. 12. 29	조례 제1059호
	2010. 2. 23	조례 제1070호
	2010. 8. 2	조례 제1091호
	2010. 12. 17	조례 제1117호
일부개정	2011. 7. 8	조례 제1155호
일부개정	2011. 12. 15	조례 제1192호
일부개정	2012. 3. 2	조례 제1216호
일부개정	2012. 9. 6	조례 제1243호
일부개정	2013. 3. 6	조례 제1273호
일부개정	2013. 11. 1	조례 제13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내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구, 읍·면·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6, 2009. 12. 29, 2010. 8. 2, 2010. 12. 17>

1. 직속기관 : 농업기술센터, 처인구 보건소, 기흥구 보건소, 수지구 보건소
2. 사업소 : 평생교육원,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3. 하부행정기관 :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

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신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북동

제3조(국장 및 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과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보건소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읍·면·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재지) 시 본청,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시 본청

제5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국, 재정경제국, 문화복지국,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을 둔다. <개정 2013. 3. 6, 2013. 11. 1>

[전문개정 2010. 12. 17]

제6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공보관, 감사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3. 3. 6>

[전문개정 2010. 12. 17]

제7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① 안전행정국에는 행정과, 정책기획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안전총괄과를 둔다. <개정 2010. 12. 17, 2013. 3. 6, 2013. 11. 1>

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3. 6, 2013. 11. 1>

1. 총무, 의전, 복무, 인사, 선거, 공무원 교육,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

2.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 조직관리, 시의회, 국제교류, 통계에 관한 사무
3. 지출·계약,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무
4. 행정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무
5. 고객만족, 민원행정, 민간협력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6. 안전 및 재난관리 정책총괄·조정·통합관리, 민방위에 관한 사무

제8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① 재정경제국에 재정법무과, 세정과, 징수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를 둔다.

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편성 및 집행, 투자심사, 재정전략 및 법무에 관한 사무
2. 지방세, 자금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무
3.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무
4. 지역경제, 고용, 일자리에 관한 사무
5. 기업지원, 기업유치, 통상협력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 3. 6]

제9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개정 2013. 3. 6>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 9. 6, 2013. 3. 6>

1. 문화예술, 관광,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무
2. 체육행정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
3. 보훈, 사회서비스, 무한돌봄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무
4.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무
5. 여성복지, 다문화 및 청소년에 관한 사무
6. 아동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0. 12. 17]

[중전 제8조에서 이동 <2013. 3. 6>]

제10조(산업환경국에 두는 과) ① 산업환경국에 농업정책과, 산림과, 환경과, 녹색성장과, 청소행정과, 위생과를 둔다.

② 산업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 축산 및 가축에 관한 사무
2. 산림 및 산림휴양에 관한 사무
3. 환경보전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무
4. 녹색성장, 대기, 에너지에 관한 사무
5. 청소, 재활용 및 환경시설관리에 관한 사무
6. 위생 및 원산지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3. 3. 6]

[중전 제9조에서 이동 <2013. 3. 6>]

제11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행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3. 3. 6>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3. 6>

1.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2.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무
3. 건축에 관한 사무
4. 주택에 관한 사무
5. 지적,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0. 12. 17]

[중전 제10조에서 이동 <2013. 3. 6>]

제12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하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개정 2013. 3. 6, 2013. 11. 1>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3. 6, 2013. 11. 1>

1. 도로, 교량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 하천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무
3. 교통개선, 교통정보, 주차관리에 관한 사무
4. 대중교통, 운수 및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3. 11. 1>

[전문개정 2010. 12. 17]

[중전 제11조에서 이동 <2013. 3. 6>]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13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중전 제12조에서 이동 <2013. 3. 6>]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중전 제13조에서 이동 <2013. 3. 6>]

제15조(센터에 두는 과) ① 센터에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를 둔다. <개정 2009. 12. 29>

②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 3. 2>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무
2.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에 관한 사무
3. 농촌청소년 및 농업후계자 등 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무
4. 지역농업의 개발 및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
5. 농업경영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
6. 농·축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에 관한 사무
7. 농작물 병충해 예방·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8.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9.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10. 농촌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무

- 11.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육성에 관한 사무
- 12.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무
- 13.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관한 사무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3. 3. 6>]

제16조(상담소의 설치) ①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 기술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3. 3. 6>]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3. 3. 6>]

제18조(소장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과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 12. 29, 2013. 11. 1>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1. 1>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3. 3. 6>]

제1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둔다. <신설 2009. 12. 29>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

정 2009. 12. 29>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11. 1>

[중전 제18조에서 이동 <2013. 3. 6>]

제4장 사업소

제20조(설치)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중전 제19조에서 이동 <2013. 3. 6>]

제2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 및 원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12. 17>

제2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6, 2009. 12. 29, 2010. 12. 17, 2013. 3. 6, 2013. 11. 1>

1. 평생교육원

- 가. 교육정책의 추진 및 학교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무
- 나. 평생학습 활성화 및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관한 사무
- 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 라.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
- 마.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에 관한 사무
-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부업알선에 관한 사무
- 사. 여성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무
- 아.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자. 도서 및 각종 기록물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무
- 차.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무
- 카.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협조에 관한 사무

- 타.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파. 기타 운영에 관한 사무
- 2. 도시사업소
 - 가. 공원·녹지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
 - 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 다. 용인경량전철사업 계획수립, 기술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무
 - 라. 민간자본유치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사무
 - 마. 용인경량전철사업 시설인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바. 용인경량전철사업 활성화 및 재정지원 대책에 관한 사무
 - 사. 차량등록, 차량검사 및 의무보험에 관한 사무
- 3. 상하수도사업소
 - 가.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무
 - 나.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
 - 다. 상수도 시설 확충에 관한 사무
 - 라. 송·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에 관한 사무
 - 마. 정수의 생산·공급 및 수질시험에 관한 사무
 - 바.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사. 하수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무
 - 아. 용인하수처리장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
 - 자. 분뇨·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4. 삭제 <2010. 12. 17>
- 5. 삭제 <2010. 12. 17>
- 6. 삭제 <2009. 6. 26>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구청장)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과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구에 두는 과)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생활민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건설도시과, 건축과를 둔다. <개정 2010. 12. 17, 2011. 7. 8>

제2절 읍·면·동

제2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직무)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통·리·반장 조직운영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는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9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16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7. 8, 2012. 3. 2, 2012. 9. 6, 2013. 3. 6, 2013. 11. 1>

1. 집행기관의 정원 : 2,14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전문개정 2010. 12. 17]

제30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1. 1]

제3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삭제 <2013. 11. 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1. 11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12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3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②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복지업무”를 “주민생활지원업무”로 한다.

부칙 <2007. 7. 1 조례 제8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담당간사”를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 내지 제4호를 동조동항제2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②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35인 이내”를 “40인 이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건설도시 4개”를 “자치행정, 주민생활지원, 산업정책, 도시주택, 건설교통 5개”로 한다.

③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조 중 “경제환경업무담당”을 “산업정책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용인시 주택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주택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산업정책국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산업정책국장”으로 한다.

⑦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기술지도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각각 한다.

제15조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한다.

⑧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한다.

⑨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공보실, 감사담당관실”을 각각 “공보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산업정책국”으로, 동호나목 중 “건설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동호다목 중 “도시환경사업소”를 “하수도사업소”로, 동호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동호다목 내지 라목을 동호라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설교통국에 속하는 사항

⑩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내무위원장”을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제3조의2제1항 중 “내무분과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한다.

⑪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환경사업소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동조 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산업정책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7. 12. 17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조례 제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22명”을 “23명”으로 하고,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시행

규칙」”을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6. 26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9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3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조례 제1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행정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 중 “23명으로 하며”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며”로 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정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사업소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산업정책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경제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산업정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정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 산업정책”을 “문화복지, 경제환경”으로 한다.

⑥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 실·국장, 산업정책업무 담당 실·국장”을 “문화복지업무 담당 실·국장, 경제환경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⑦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공보관,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 정보문화기획단”을 “공보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문화복지국”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산업정책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동호라목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다목 중 “건설사업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⑧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를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을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를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⑨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을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부칙 <2011. 7. 8 조례 제1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라목 중 “각 구청(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을 “각 구청(생활민원과, 건설도시과, 건축과)”으로 한다.

부칙 <2011. 12. 15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직 전환대상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 수가 당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3. 2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6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6 조례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5개”를 “자치행정(지역안보), 재정경제, 문화복지, 산업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6개”로 한다.

②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복지업무 담당 실·국장, 경제환경업무 담당 실·국장”을 “자치행정업무 실·국장, 문화복지업무 담당 실·국장, 산업

환경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③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세정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④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보통신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은 “정보통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⑤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 문화복지국장, 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⑧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⑪ 「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호, 제2호, 제3호의 “환경부서”를 각각 “녹색성장부서”로 한다.

⑫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건축기획담당” 및 “건축과장”을 각각 “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과장”으로 한다.

⑬ 「용인시 경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관사업추진업무 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나목부터 라목을 다목부터 마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3호 중 나목의 “경제환경국”을 “산업환경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다목의 “도시사업소”를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사업소”로 한다.

⑮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 11. 1 조례 제1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지역안보)”를 “안전행정(지역안보)”로 한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⑦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용인시자치행정국장”을 “용인시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3. 11. 1>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재지(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용 인 시 청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556)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 (사암리 858-1)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556)	
용인시기흥구보건소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1 (신갈동 60-8)	
용인시수지구보건소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풍덕천동 720)	
용인시 평생 교육원	평생교육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556)	
	동부도서관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역북동 504-1)	
	서부도서관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7번길 23 (풍덕천동 1088)	
용인시 도시 사업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556)	
용인시 상하수 도시 사업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556)	
용인시 처인구 청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286)	
용인시 기흥구 청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구갈동 355)	
용인시 수지구 청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풍덕천동 720)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기 관 명		소 재 지	관할구역
처 인 구	포곡읍사무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 (삼계리 588-5)	포곡읍 일원
	모현면사무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독점로 31-6 (갈담리 309)	모현면 일원
	남사면사무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 (남사면 봉무리 438-1)	남사면 일원
	이동면사무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673 (송전리 750-3)	이동면 일원
	원삼면사무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 (고당리 88-1)	원삼면 일원
	백암면사무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 (백암리 495-3)	백암면 일원
	양지면사무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105번길 5 (양지리 701-9)	양지면 일원
	중앙동주민센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78번길 7 (김량장동 303-3)	김량장동, 남동 일원
	역삼동주민센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26번길 10 (역북동 518-4)	역북동, 삼가동 일원
	유림동주민센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15 (유방동 475-4)	유방동, 고림동 일원
동부동주민센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 (마평동 533-8)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일원	
기 흥 구	신갈동주민센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1 (신갈동 60-8)	신갈동 일원
	영덕동주민센터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15 (영덕동 974-7)	하갈동, 영덕동 일원
	구갈동주민센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23 (구갈동 578)	구갈동 일원
	상갈동주민센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2 (상갈동 472)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일원
	기흥동주민센터	용인시 기흥구 한일로9번길 9 (공세동 388-23)	공세동, 고매동 일원
	서농동주민센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644 (서천동 335-2)	농서동, 서천동 일원
	구성동주민센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77번길 17 (언남동 342-15)	언남동, 청덕동 일원
	마북동주민센터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59 (마북동 181-2)	마북동 일원
	동백동주민센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3 (중동 847)	동백동, 중동 일원
	상하동주민센터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23 (상하동 435-12)	상하동 일원
	보정동주민센터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35 (보정동 1266-4)	보정동 일원

기 관 명		소 재 지	관할구역
수 지 구	풍 덕 천 1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3 (풍덕천동 701 - 1)	풍덕천동 일원
	풍 덕 천 2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1 (풍덕천동 1051 - 2)	풍덕천동 일원
	신 봉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15 (신봉동 898)	신봉동 일원
	죽 전 1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15번길 50 (죽전동 1070 - 9)	죽전동 일원
	죽 전 2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23 (죽전동 1003 - 43)	죽전동 일원
	동 천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83번길 40 (동천동 176 - 4)	동천동, 고기동 일원
	상 현 1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71 (상현동 839)	상현동 일원
	상 현 2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82 - 4 (상현동 66 - 2)	상현동 일원
	성 복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00 (성복동 285 - 8)	성복동 일원

[별표 2] <개정 2012. 3. 2>

농업기술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담 당 구 역
도시농업상담소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47 (중동 676-6)	기흥구·수지구 관할 동지역
중 앙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 (마평동 533-8)	양지면, 중앙동, 역삼 동, 유림동, 동부동
북 부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 (포곡읍 삼계리 588-5)	포곡읍, 모현면
남 사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 (남사면 봉무리 438-1)	남사면
이 동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673 (송전리 750-3)	이동면
원 삼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로 7-1 (고당리 35-11)	원삼면
백 암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로 17-5 (백암리 448-4)	백암면

[별표 3] <개정 2013. 11.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처 인 구 보 건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처 인 구 일 원
기 흥 구 보 건 소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1 (신갈동 60-8)	기흥구 일원
수 지 구 보 건 소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풍덕천동 720)	수 지 구 일 원
처인구 포곡읍 지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삼계리 588-5)	포 곡 읍 일 원
처인구 모현면 지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독점로 31-6(갈담리 309)	모 현 면 일 원
처인구 남사면 지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봉무리 438-1)	남 사 면 일 원
처인구 이동면 지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673(송전리 750-3)	이 동 면 일 원
처인구 원삼면 지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고당리 88-1)	원 삼 면 일 원
처인구 백암면 지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백암리 495-3)	백 암 면 일 원
처인구 양지면 지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 105번길 5(양지리 701-9)	양 지 면 일 원
원암 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421번길 8-1(원암리 242-15)	원암, 2 3리, 진목, 2 3리 전궁, 2리
아곡 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남산로6번길 2(아곡리 460-5)	아곡, 2리, 완정, 2, 3리 창, 2, 3리
죽능 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634(죽능리 산15)	죽능, 1, 2, 3, 4, 5, 6리 목신, 2, 3, 4리
대대 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571번길 25(대대리 423-1)	대대, 2, 3, 4리, 정수리 주북, 2, 3, 4, 5, 6리
백봉 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797번길 48(백봉리 213-3)	백봉, 2, 3, 4, 5, 6, 7, 8리 고안, 2, 3, 4리
장평 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599-3(장평리 597-6)	장평, 1, 2, 3, 4리, 용천, 2, 3, 4리, 옥산, 2, 3, 4리 석천, 2, 3리
가창 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로24번길 25(가창리 228-3)	가창, 1, 2, 3, 4, 5리
고매 보건진료소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 713-1(고매동 692-1)	고매, 2, 4, 8통 농서1통
공세 보건진료소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90번길 64(공세동 281-10)	고매, 3, 5, 6, 7통 공세, 1, 2, 3통
고기 보건진료소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377(고기동 103)	고기, 1, 2, 3통

[별표 4]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3조 관련)

구 명	관 할 구 역	비 고
처 인 구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기 흥 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하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영덕동, 언남동, 마북동, 청덕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수 지 구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별표 5] <개정 2013. 11.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0조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8% 이상	2% 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6] <개정 2013. 11. 1>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5% 이내	7% 이내	25% 이내	32% 이내	27% 이내	7.5% 이상

2. 지방전문경력관

구 분	전문경력관
비 율	100% 이내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2% 이내	88% 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0% 이내	15% 이내	35% 이내	20% 이상	20% 이상

[별표 7] <개정 2013. 11.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1조 관련)

(단위 : 명)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2,166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계	2,121	-					
2급	1	1	-	-	-	-	-
4급	16	6	1	3	3	3	-
5급	111	36	3	6	11	24	31
6급 이하 계	1,993	-					
별정직 계	2	-	-	-	-	-	-
5급상당	-	-	-	-	-	-	-
6급상당 이하 계	2	-					
전문경력관 계	1	-					
연구직 계	6	-					
연구관	-	-	-	-	-	-	-
연구사	6	-					
지도직 계	35	-					
지도관	4	-	-	4	-	-	-
지도사	31	-					

[별표 8] 삭제 <2013. 11. 1>